

2016년 지방직 9급 행정법 총평 및 해설

실천닷컴, 아모르 이그잼 행정법 대표교수 강태월

이번 지방직 행정법은 예상문제를 많이 풀어 보지아니한 수험생의 경우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출제입니다. 소송법 파트에서 기 출제되지 아니하였던 판례가 2개 정도 출제되었고 사례형 문제도 1문제가 있었으므로 시험장에서 다소 당황할 여지와 시간소요가 많이 들어가 시간 안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이미 기출된 문제들이고 새롭게 출제된 판례문제도 기존에 학습한 이론으로 답을 찾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론 아직 학습이 충분히 되지 아니한 수험생들은 시험이 어렵게 느껴졌겠지만 정상적인 이론과 문제풀이 과정을 들은 수험생들은 100점이 가능한 시험이라고 보여 집니다. 영역별 총평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제 영역		출제 문항 수	총평
1편	행정법 통론	3	신뢰보호의원칙, 시효제도, 사인의 공법행위가 출제되었고 신뢰보호의원칙에서 기 출제되지 아니한 지문 2개가 나왔으나 기존 학습한 이론으로 충분히 도출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5년 연속으로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이번시험에서는 출제된 적은 없지만 출제가 예상되었던 판례가 출제되었고 이미 마인드맵 행정법 예상문제집에 거의 동일한 문제가 만들어져 있다.
2편	행정작용법	5	행정입법1문제 행정계획 1문제 나머지는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이다.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출제되었고 새로운 지문이 1문제 출제되었으나 평이한 출제이다.
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	평이한 출제이며 공매결정의 취소되면 공매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예전에 한번 출제된 바 있고 논리상 당연한 지문이다.
4편	사전구제	2	행정절차법에 관련된 문제는 기 출제된 바 있는 평이한 문제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출제된 단체소송에 관한 문제는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나 해당 사안을 꼼꼼히 읽어 보지아니한 수험생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였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정이 잦고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내용 또한 방대하니 평상시에는 기본적인 뼈대를 잡고 있다가 지엽적인 것은 시험치기 전에 꼼꼼히 읽어 보고 시험장에서 기억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손해전보	2	이미 출제된 바 있는 평이한 출제이다.
	행정쟁송	6	원고적격에 있어 교재에는 있으나 출제되지 아니하였던 판례가 1문제 출제되었고 피고적격을 묻는 문제로서 대통령에 의한 망인에 대한 독립유공자서훈취소가 결정을 다투는 문제가 새롭게 출제되었는데 해당 판례는 사실 하자승계 파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례이므로 하자승계 파트에서 먼저 출제가 이루어 지는게 합당하나 피고적격문제로 출제가 먼저 되었다. 이론적으로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는 보훈처장이 피고가 될수 없고 소속장관이 피고가 된다는 것은 익히 출제된바 있는 사안이다.

출제영역 : 4편 2장 손해전보

1.

정답 ④

해설

④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할 것인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6.10.13, 2006두7096).

2.

정답 ①

출제영역 : 1편 행정법통론

해설

- ② 개개 국민이 신뢰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표명인 것이지 행정청 내부의 지침을 공표한 것만으로 개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신뢰보호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 ③ 행정청의 선행조치에서의 행정청은 형식적 분장이 아닌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다.
- ④ 위법한 선례에는 자기구속을 주장할 수 없다.

3.

정답 ②

출제영역 : 2편 2장 행정계획

해설

② 도시계획입안제안과 관련하여서는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위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과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8, 2003두1806).

4.

정답

출제영역 : 2편 1장 행정입법

해설

- ① 집행명령이 없어도 법령이 시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권에게

집행명령을 제정해야 할 의무는 없다.

5.

정답 ②

출제영역 : 2편 3장 행정행위

해설

- ㄱ.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는 강학상 인가이다.
- 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특허이다.
- ㄷ. 건축물 준공검사처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확인으로 사례로 봄이 일반적이다.
- 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인가는 강학상 인가이다.

6.

정답 ③

출제영역 : 4편 1장 사전구제(행정절차법)

해설

③ 행정청은 일반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7.

정답 ①

출제영역 : 4편 1장 사전구제(개인정보보호)

해설

- ①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③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 ④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나.

8.

정답 ②

출제영역 : 1편 행정법 통론(시효제도)

해설

- ① 국유재산법 상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조세처분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부과된 조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④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과세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않음은 물론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해서 이에 기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이 실효되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도 사라지지 않는다(대판 1988.2.23, 85누820).

9.

정답 ①

출제영역 : 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해설

①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10.

정답 ④

출제영역 : 4편 3장 행정쟁송법(원고적격)

해설

④ 재단법인인 수녀원 D는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는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11.

정답 ②

출제영역 : 2편 행정작용법(부관)

해설

② 부당하게 짧은 종기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으면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하지만 부당하게 짧은 종기가 있다는 표현 없이 허가기간의 연장의 신청이 있었다고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2.

정답 ②

출제영역 : 4편 행정구제법 제3장 행정쟁송(가구제)

해설

② 취소소송에서는 권력분립상 가처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2.7.6, 92마54).

13.

정답 ④

출제영역 : 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해설

④ 판례는 1장의 문서로 의무부과와 계고통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2.6.12, 91누13564) 따라서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4.

정답 ③

출제영역 : 2편 행정작용법(하자의 치유)

해설

①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였다면, 처분 당시의 하자는 치유되지 아니한다. 치유는 기존 하자의 사후보완이지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②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의 것이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 되지 아니한다. 무효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아니다.

④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얻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춘 양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낸 자가 처분 후 각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경합관계에 있는 적법한 허가신청을 한 자에게 불이익하게 됨)(대판 1992.5.8, 91누13274).

15.

정답 ③

출제영역 : 4편 행정구제법 제3장 행정쟁송법(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해설

① 도로점용허가는 재량행위이다.

② 甲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乙이 도로 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실체적 심리는 할 수 없고 부작위의 위법만을 심리할 수 있다.

④우리 법원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6.

정답 ③

출제영역 : 4편 2장 손해전보

해설

③ 법관의 재판행위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면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위협하므로 국가배상을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다만, 재판이 경험적 법칙에 현저히 위반되면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17.

정답 ③

출제영역 : 1편 행정법 통론(사인의 공법행위)

해설

③ 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이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전통 민간요법인 침.뜸행위를 온라인을 통해 교육할 목적으로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설립한 甲이 구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교육 내용이 의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막연

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 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대판 2011.7.28. 선고 2005두11784).

18.

정답 ③

출제영역 : 4편 행정구제법 3장 행정쟁송법

해설

- ① 무효등확인소송의 입증책임은 원고책임설 이다.
- ② 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재결의 주체, 내용, 절차 및 형식상의 위법을 의미한다.
- ④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19.

정답 ③

출제영역 : 4편 행정구제법 3장 행정쟁송

해설

-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와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는 소속장관을 피고로 한다.(단,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해당 지문은 별개목적의 연속된 처분이지만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사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나 당황스럽게도 피고적격을 묻는 문제로 먼저 출제되고 있다.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룰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甲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라 한다)의 최종발표(선행처분)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장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자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던 甲의 유가족 乙 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자 결정(후행처분)을 한 사안에서, 진상규명위원회가 甲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乙은 후행처분이 있기 전까지 선행처분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후행처분인 지방보훈지청장의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했을 뿐, 통지를 받지도 않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乙이 선행처분에 대하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밟거나 후행처분에 대한 것과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 없게 하는 것은 乙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주고 그 결과가 乙에게 예측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 있다(대판 2013.3.14. 2012두6964).

- ③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 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 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1.7.27. 99두 9490).

20.

정답 ③

출제영역 :4편 행정구제법(행정심판)

해설

- ① 고지사안을 고지하지 아니한 불고지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설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안날로부터 90일은 적용받지 아니한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
- ④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